

國民年金과 高齡層 勞動市場의 退職 誘因⁽¹⁾

李 智 慧

산업화된 선진국들은 人口老齡化와 함께 고령층의 經濟活動參加率의 下落과 早期 隱退問題를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公的年金의 구조가 고령 인구에게 노동시장에서 早期隱退 誘因을 제공함을 밝히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층 경제활동을 살펴보고, 향후 본격적인 國民年金의 개시 후에 국민연금이 고령층 노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분석한다. 국민연금의 보편적 수급이 가능해지면 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에서 한 해 더 노동시장에 머물기보다는 조기은퇴할 유인이 있다. 우리나라의 은퇴연령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나 연금수급개시 후 隱退 年齡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1. 머리 말

산업화된 선진국들의 인구가 급속히 老齡化하고 있고, 평균수명은 길어지고 있으며, 몇몇 국가에서는 지난 30년간 60-64세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5% 이상 감소했다. 1960년대에는 대부분의 산업화된 국가들의 60-64세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0%~80% 이상이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는 20% 이상 감소했고 독일은 35%, 스페인은 40%, 미국은 82%에서 53%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근로자들의 조기은퇴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고령층의 勞動 參加率 하락과 早期隱退에 대한 가능한 설명 중의 하나는 公的年金이 조기은퇴를 촉진하고 국가의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Gruber and Wise(1999)의 연구에서는 많은 국가의 공적연금의 구조가 고령인구에게 노동시장에서 떠나게 만드는 많은 誘因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또 다른 연구(2002)에서는 공적연금 제도가 상이한 모든 나라에서 공적연금이 노동력 공급에 퇴직유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은퇴결정에 개인의 연금에 대한 기여도뿐만 아니라, 최초 수혜가능연령과 은퇴 시의 年金給與(benefits)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

우리나라도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인 사회를 가리키는

(1) 지도해 주시고, 논평해 주신 이철희 교수님과 KDI의 문형표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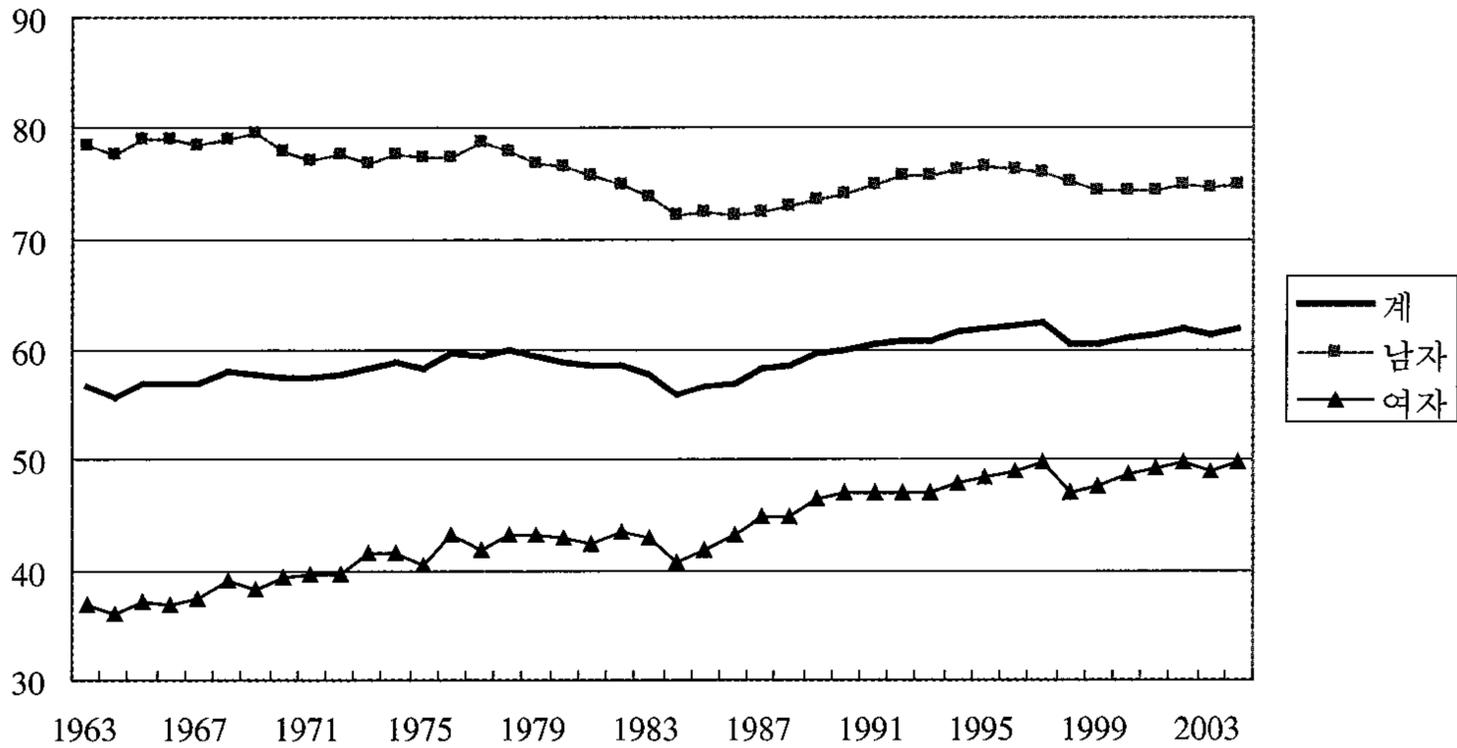
‘高齡化 社會(Aging Society)’에 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하여 매우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화의 시작이 지연되어 인구증가율은 늦게 상승한 반면 압축적인 고도성장의 결과 인구증가율은 보다 빠르게 하락하여 인구구조가 보다 급속히 고령화하고 있는 것이다. 20-64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인 老人扶養費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를 살펴보면 1960년에는 8.1%, 1980년에는 7.6%, 2000년에는 11.8%로 증가했고,⁽²⁾ 2020년 21.3%, 2030년 35.7%, 2040년 51.6% 그리고 2050년에는 62.5%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2001)]. 빠른 속도의 인구구조 고령화는 향후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경제활동참가율 및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장년층 노동력의 비중을 낮춤으로써 장기적으로 인력부족 및 노동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전영준·김종면(2001)]. 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될 것이며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한 많은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아직 본격적으로 공적연금인 國民年金이 개시되지 않아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이 활성화되면 고령화와 더불어 조기은퇴의 유인으로 작용하여 향후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적연금이 노동시장에, 특히 고령층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의미를 지닌다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30년간의 우리나라 노동참가율의 하락 정도를 기술하고 향후 고령층의 노동시장참가율의 하락에 대한 예상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될 경우 그것이 조기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을 야기할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 高齡層의 經濟活動

2.1. 經濟活動參加率 推移 및 展望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60년대부터의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의 추이를 분석해보면,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 經濟活動參加率은 1970년에는 55.8%, 1980년에는 57.1%, 1990년에는 60.0%, 2000년에는 61% 정도로 완만하게 증가해 왔다. 성별로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년대 중반의 제1차 오일쇼크 이후, 8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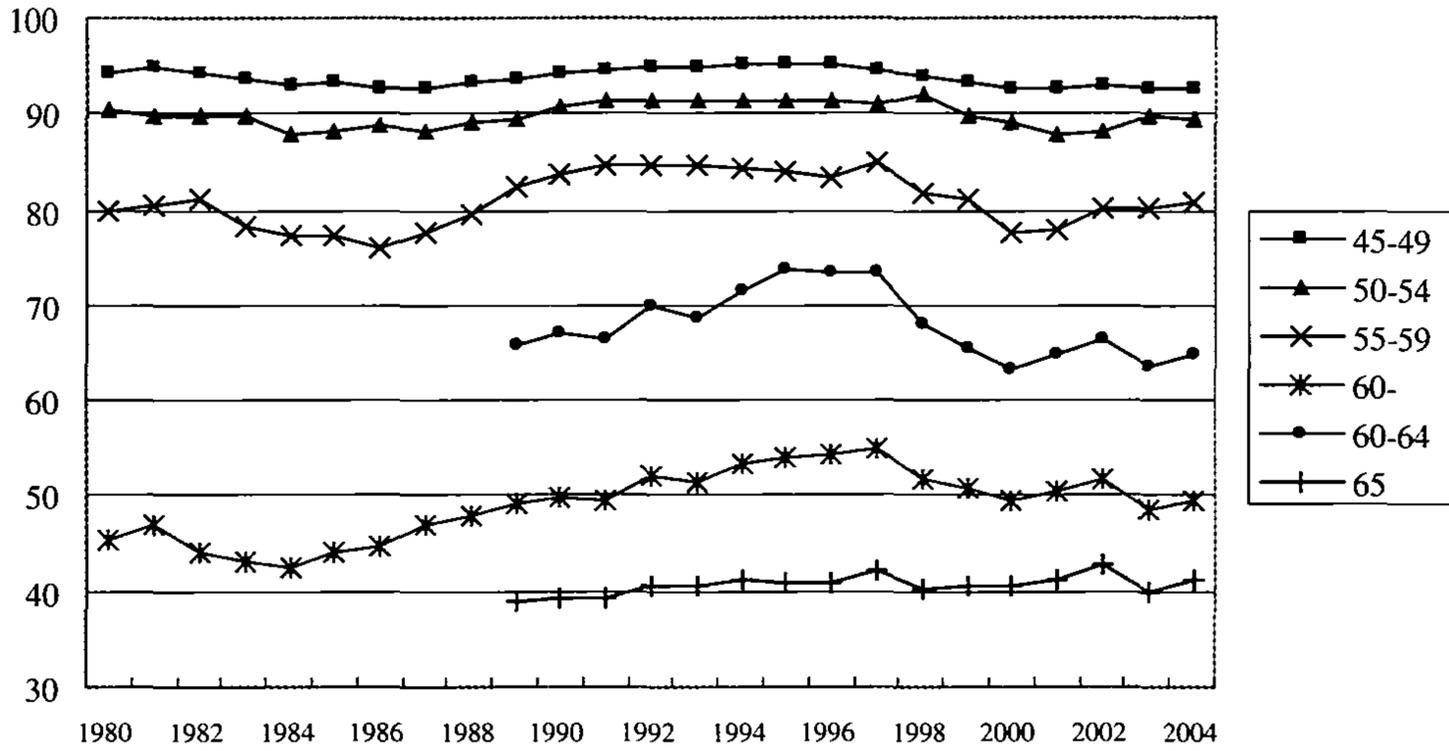
(2) 통계청 인구총조사(1960, 1980, 2000)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1960년의 경우,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3.7%(남자 3.1%, 여자 4.4%), 1980년에는 5.8%(남자 4.4%, 여자 7.2%), 2000년의 경우에는 7.5%(남자 5.9% 여자 9.1%)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OECD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낮은 부양비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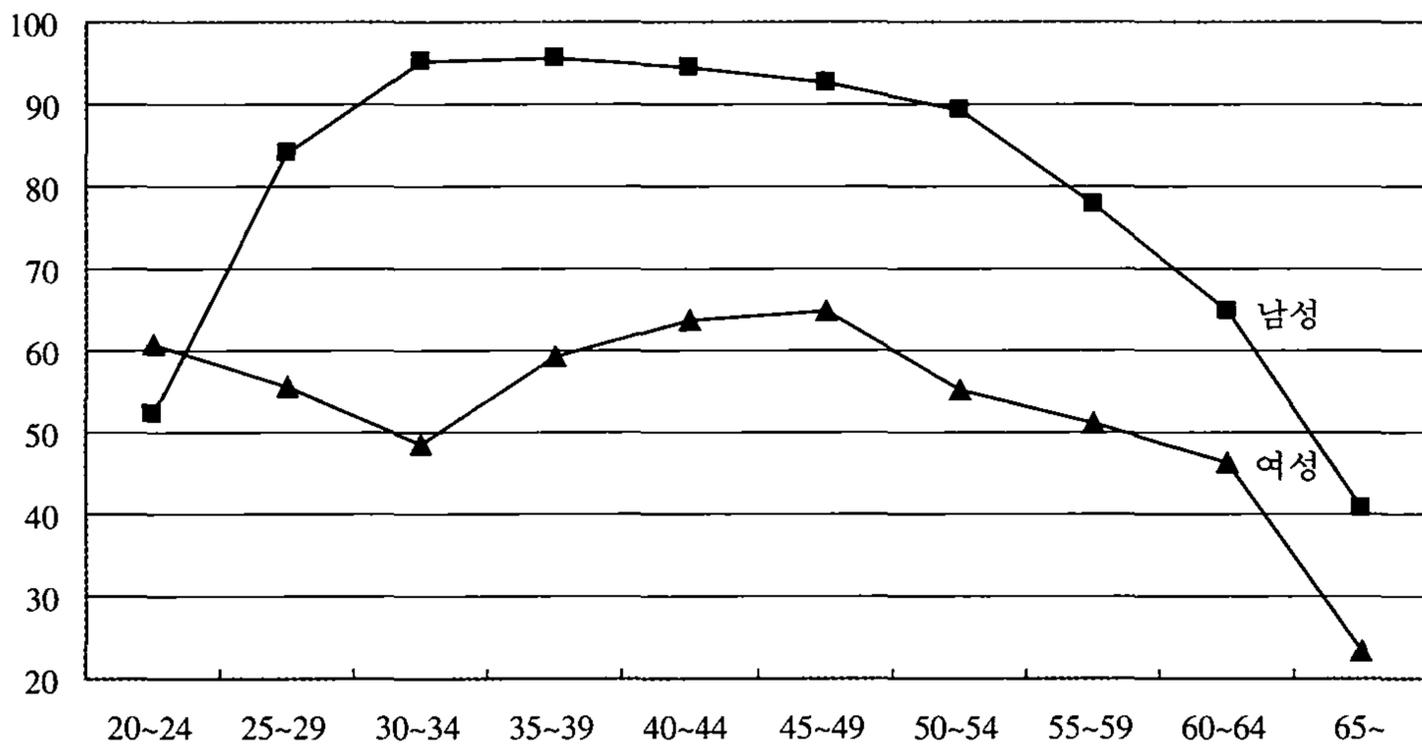
〈그림 1〉 年度別 經濟活動參加率 推移

초반 세계적인 경기불황기간에 하락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75%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80년대 중반과 IMF 외환위기 때 약간 주춤하는 경향을 제외하고는 1970년의 38.5%에서 2000년 48.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失業率은 1960년대 이후 감소해서 1990년대 초엔 전체실업률이 2%까지 낮아지기도 하였으나 IMF 경제위기 이후에 5% 이상 급속히 상승했고, 최근에는 다시 낮아져 외환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인 3%대로 낮아지고 있다.

〈그림 2〉의 남성의 연령별·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50대 중반까지는 경제활동참가율이 90%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가, 55-59세에는 10% 정도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60세 이상의 고령 남성의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은 50% 정도로 그 수위가 급감한다. 1980년 45%에서 계속 증가하여 1997년 55%까지 상승하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5% 정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그 수준이 50%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그 중, 60-64세 연령층에서의 연도별 변화추이가 큰데, 1997년까지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했으나 1998년 이후 크게 낮아졌는데, 그 급감폭이 다른 연령층에서의 양상보다 크고, 현재 65% 정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이에 대한 설명으로 최경수(2003)에서는 이 연령계층이 경제활동상태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하는 隱退가 주로 일어나는 연령계층이며 노동의 수요와 공급조건의 변화가 은퇴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의 현재 45-54세까지는 90%대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고, 55-59세까지는 80% 수준,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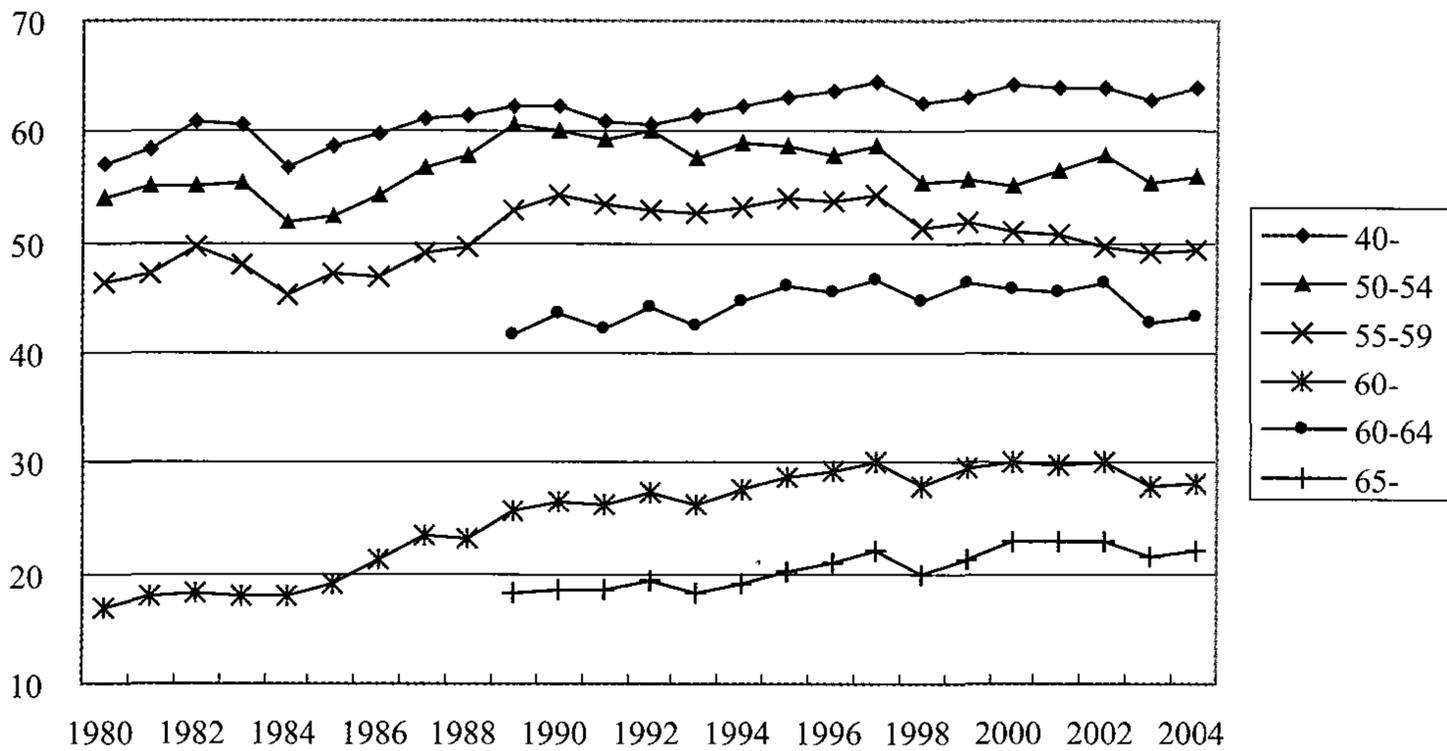
〈그림 2〉 年度別 高齡男性 經濟活動參加率 推移



〈그림 3〉 2003年度 男·女 年齡代別 經濟活動參加率

64세까지는 65% 수준, 65세 이후에는 40% 정도로 연령계층에 따라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고령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살펴보면, 2003년 현재 45-49세까지는 60%, 55-59세는 약 50%, 60-64세까지는 45% 정도, 65세 이상에서는 20%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들은 대체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전 연령대에서 높은 수준의 경제활동참가율이다. 그리고 시간이



〈그림 4〉 年度別 高齡女性 經濟活動參加率 推移

지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60-64세 연령대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다른 OECD 주요 국가들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젊은층의 경우에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어떠한 나라에서도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Gruber and Wise(1999)]. 우리나라도 향후 연금의 보편적 수급과 노령화 등으로 인해 지금과는 다른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고령화된 서구 유럽 선진국들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고령자의 낮은 經濟活動參加率이다. 공적, 사적 연금을 포함하여 각종 노후소득보장 장치가 잘 정비되어 있고 관대하여 고령 근로자들은 정년까지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도 생활에 큰 지장 없이 은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 유럽의 경우에는 고령층의 조기퇴직으로 인한 수급자의 증가와 보험료 기여자의 감소로 노령연금제도가 재정적 도산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의 진행과 관련하여 가장 긍정적인 지표 중의 하나가 바로 고령자들의 勞動市場參與率이라 할 수 있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은 편으로,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OECD 국가 중에서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아주 높은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의 고령자들의 높은 노동시장참여율은 한국 노동시장의 특수한 구조적 특성—높은

〈表 1〉 高齡層의 雇傭上 地位 分包(2000年) (단위: %)

	남성: 55~64세	여성: 55~64세	남성: 65세 이상	여성: 65세 이상
임금: 정규직	21.6	3.9	6.6	1.0
임금: 임시직	13.6	19.4	10.7	8.4
임금: 일용직	10.4	16.7	5.8	14.8
비임금: 고용주	8.7	2.9	4.8	0.6
비임금: 자영업	44.5	26.2	67.4	42.2
무급가족종사자	1.2	30.8	4.8	33.0

資料: 방하남 외(2004) 재인용.

자영업의 비율—에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영업 취업비율(전체 취업자의 40%)을 기록하고 있다. 자영업 취업비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높아진다. 55~64세 고령자들의 경우는 55~60% 정도,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경우는 75% 이상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임금 근로자들보다 노동시장에 오래 머문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고령층의 높은 자영업 취업 비율은 왜 한국 고령층의 노동시장참여율이 그렇게 높은가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방하남 외(2004)].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 高齡男性 經濟活動參加率에 추이는, 1997년 이후의 고령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저하가 단기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는 60-64세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60년대에는 70-80% 수준이었으나 1990년 중반에 와서는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20%, 독일은 35%, 스페인은 40%, 미국은 30%, 일본은 8% 정도의 참가율 하락을 경험했다. 우리나라도 2000년도의 60-6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10% 정도 1995년보다도 낮아졌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의 전체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어왔던 農村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증가가 계속되기 어려울 것이고, 그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도시인구의 참가율의 두 배가 넘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농촌인구의 상대적인 감소는 결국 전반적인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출 것이다. 실제로, 고령화의 속도에 대한 통계청(2004)를 보면,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촌지역(읍·면부지역)에서 고령화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여 1990년에 9.0%로 이미 高齡化 社會에 진입하였고, 2000년에는 14.7%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반면 도시지역은 1990년에 3.6%, 2000년에는 5.5%였다. 전체인구 중 농촌지역 거주인구는 1990년에는 25.6%였으나 2000년에는 20.3%로 감소했고, 65세 이상 인구 중

〈表 2〉 都市·農村의 65歲 以上 人口 比較

		전국(A)	도시(동부)	농촌(읍면부)	농촌거주인구(%)
1990	전체인구	43,390,374	32,290,055	11,100,319	25.6
	65세 이상 인구	2,162,239	1,158,570	1,003,669	46.4
	(비율)	5.0	3.6	9.0	-
2000	전체인구	45,985,289	36,642,448	9,342,841	20.3
	65세 이상 인구	3,371,806	2,001,341	1,370,465	40.6
	(비율)	7.3	5.5	14.7	-

資料: 통계청(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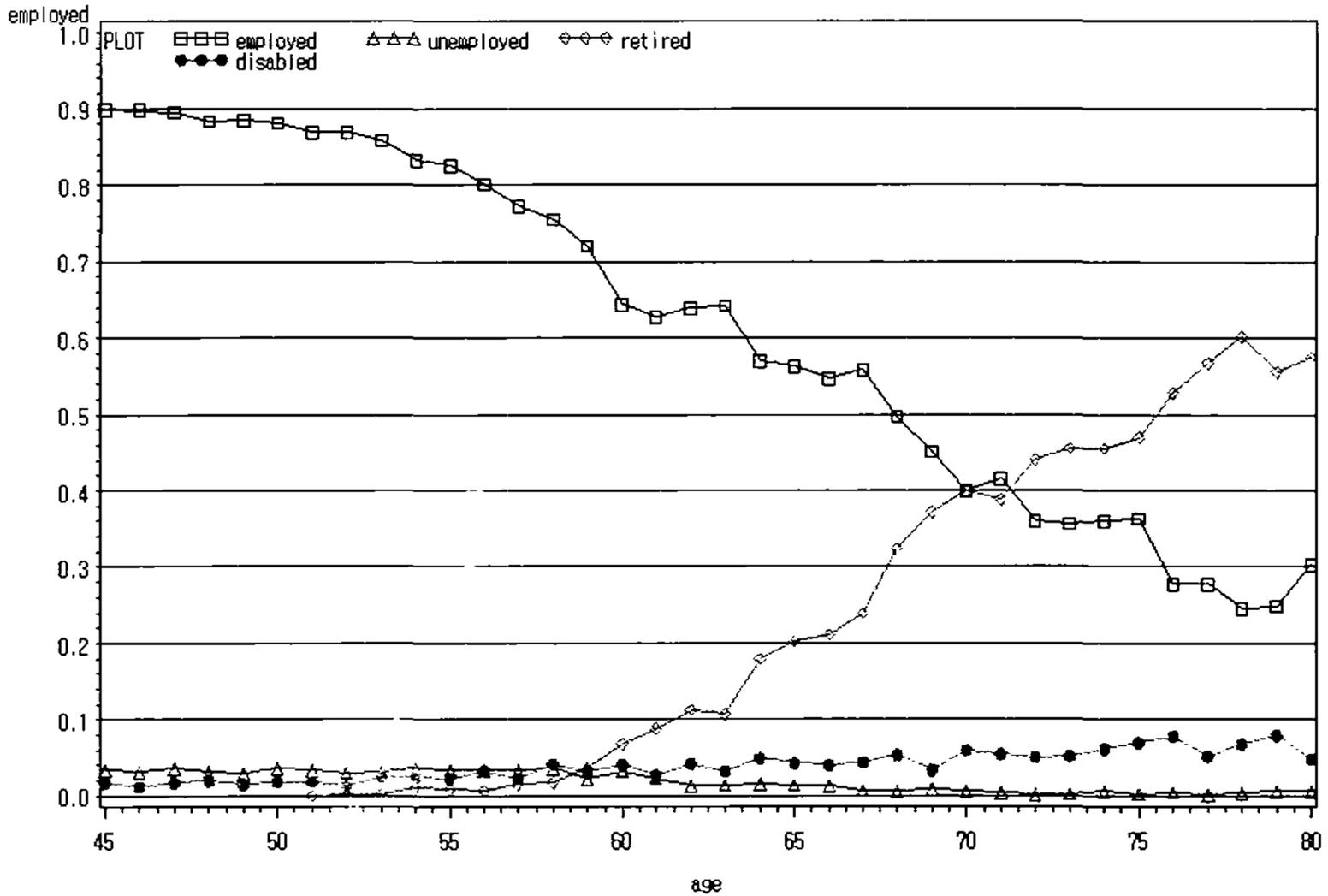
농촌지역 거주인구도 1990년에는 46.4%였으나 2000년에는 40.6%로 감소했다.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이 더 확산된다고 볼 때 향후 전반적인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國民年金의 확대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기타 退職所得의 증가는 여가에 대한 수요를 높임으로써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생산기술과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는 고령노동자들을 勞動市場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최경수 외(2003)].

2.2. 高齡層의 經濟活動狀態, 隱退 分析

2.2.1. 經濟活動狀態 分析

고령층의 경제활동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3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미시자료로 연령별 분석을 해보았다. 우선 경제활동상태는 취업, 실업, 은퇴, 장애의 4가지로 분류하였는데, 就業者는 지난 1주간 일하였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失業者는 다음과 같은 상태에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포함한다; (1)일시휴직 (2)구직활동 (3)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4) 취업준비. 그리고 隱退者는 자신의 상태를 연로라고 응답한자, 障礙者는 심신장애상태라고 응답한 자들로 보았다. Gruber and Wise(1999)의 미국의 고령층 경제활동 분석에서와 비슷한 형태로 실업과 장애인 상태의 고령층의 비중은 매우 작은 것으로 보였고, 취업자는 점점 줄고 은퇴자는 60세부터 점점 증가한다. 또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은퇴가 증가하는 연령이 늦은 편이다. 퇴직자의 비중이 10%에 도달하는 시점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62세, 미국은 약 57세, 일본은 59세, 독일은 54세, 프랑스는 55세로 우리나라의 경우가 늦은 편임을 알 수 있다.⁽³⁾ 여성의 경우도 그 경향이 비슷한 것으

(3) 퇴직자의 비중이 10%에 도달하는 시점이 우리나라는 67세, 미국은 약 57세, 일본은 59세, 독일은 54세, 프랑스는 55세 정도로 나타났다.



〈그림 5〉 年齡別 男性의 經濟活動狀態

로 나타났다.

OECD(2003)의 국가들에 대한 50-64세 고령층 노동자들에 대한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자료를 보면, 조기은퇴 등으로 인해 非經濟活動人口의 비중이 큰 벨기에, 독일, 헝가리의 고령층 경제활동비중이 작다. 우리나라의 고령층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64.3%로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경제활동의 원인을 보면, 隱退의 비중보다는 家事勞動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이유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의 서구 유럽 쪽의 국가들은 은퇴로 인한 비경제활동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2.2. 隱退 分析

앞 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은퇴연령은 늦은 편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성숙한 다른 선진국가에서의 공식적인 정년연령은 보통 사회보장 차원에서는 공적연금제도에서의 정식 연금수급개시연령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의 공적연금의 受給年齡은 65세인데, 65세를 기준으로 이보다 일찍 은퇴할 경우 '早期隱退' (early retirement)라 한다. 근로자들은 공식적인 정년연령을 전후로 해서 은퇴를 하게 되고 따라서 공식적인 정년연령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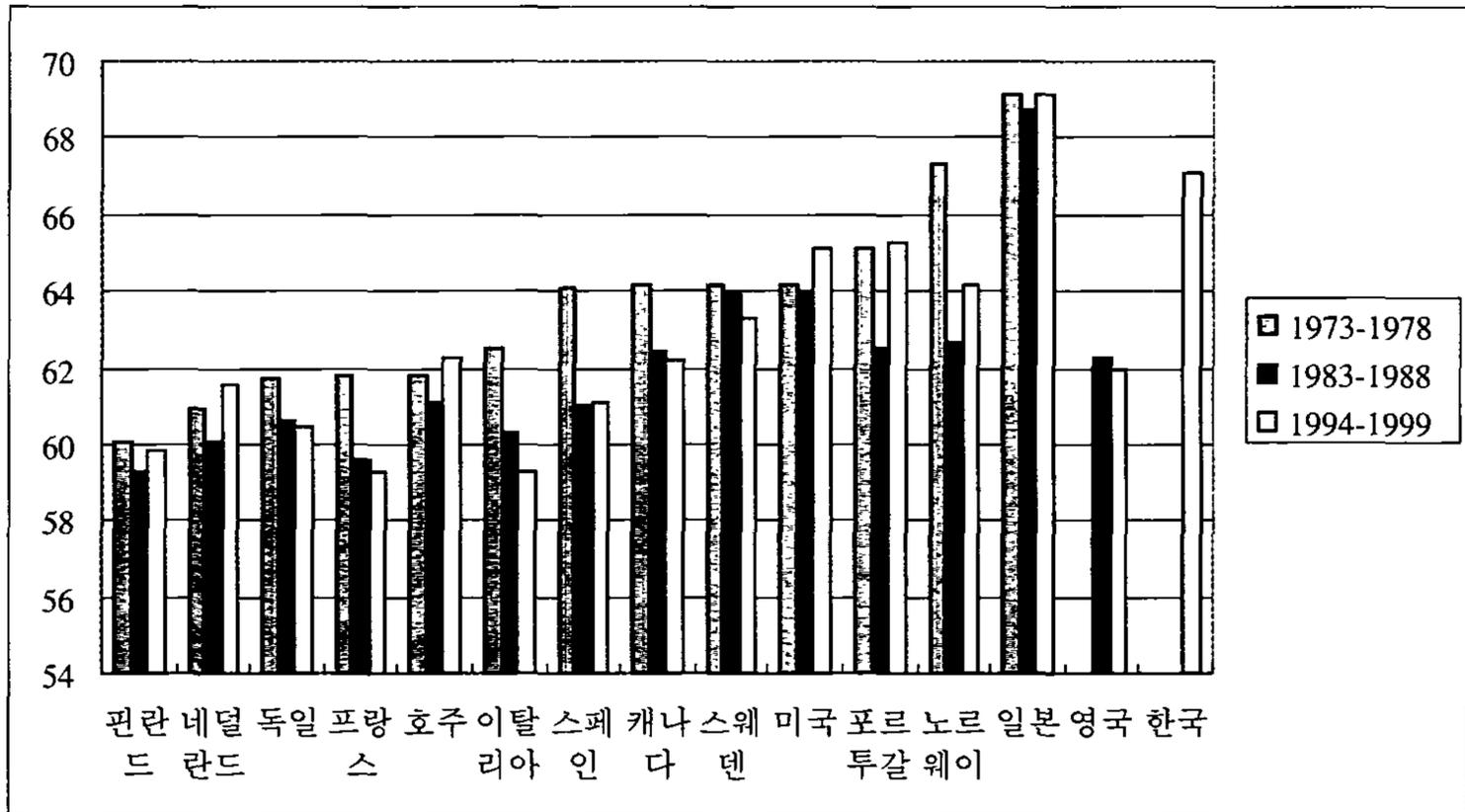
〈表 3〉 OECD 國家들의 高齡層 經濟活動狀態

국가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고용	실업	총계	근로불가	은퇴	장애	가사	기타	총계
오스트리아	44.1	3.1	47.2	0.3	38.2	2.4	7.6	4.3	52.8
벨기에	40.9	1.2	42.1	28.4	28.3	0.3	0.1	0.8	57.9
체코	54.8	3.6	58.4	0.3	31.5	8.7	0.6	0.6	41.6
덴마크	65.3	2.6	67.9	0.6	13.8	13.8	2.2	1.8	32.1
핀란드	58.4	5.0	63.4	2.0	12.3	15.9	1.3	5.1	36.6
프랑스	48.7	4.0	52.7						47.3
독일	48.6	6.0	54.6	0.4	28.7	4.1	5.0	7.1	45.4
그리스	47.1	2.2	49.2	0.2	21.2	2.3	12.5	14.6	50.8
헝가리	39.1	1.6	40.6	1.8	47.2	6.5	0.8	3.2	59.4
아일랜드	53.0	1.7	54.8						45.2
이탈리아	38.4	1.8	40.2	1.9	28.9	4.2	18.4	6.3	59.8
한국	62.6	1.8	64.3		2.4	1.6	25.5	6.1	35.7
룩셈부르크	42.3	0.7	43.0	0.0	20.2	7.9	25.2	3.7	57.0
네덜란드	52.0	1.1	53.1	1.2	11.0	13.3	7.3	14.0	46.9
노르웨이	72.8	0.9	73.7						26.3
폴란드	43.3	4.6	48.0	2.5	15.7	22.3	4.8	6.7	52.0
포르투갈	59.0	2.1	61.1	0.1	16.0	7.0	9.5	6.3	38.9
슬로바키아	40.5	6.1	46.6	0.3	50.4	1.5	0.8	0.3	53.4
스페인	44.6	4.6	49.2	0.9	10.3	7.1	12.7	19.8	50.8
스웨덴	72.0	4.1	76.1						23.9
스위스	71.0	1.5	72.5	0.3	11.9	4.3	9.5	1.4	27.5
영국	60.7	2.8	63.4	0.5	12.8	14.2	5.1	3.9	36.6
OECD	50.6	3.4	54.1	1.3	16.9	6.6	8.5	6.2	45.9

資料: OECD(2003).

별도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몇 세쯤에 은퇴하는가를 나타내는 實質的인 隱退年齡 (effective retirement age)이 고령자 노동시장의 평가와 정책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실질적인 은퇴연령은 노동시장의 고조적인 요인(기업의 강제 퇴직제도), 사회보장의 제도적 요인(연금수급권의 확보여부 및 정도), 그리고 개인의 경제적 사정 및 선호(일과 여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OECD 국가의 은퇴연령은 모두 1970년대를 거치며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은퇴연령의 수준은 높은 편이다. OECD 국가들 중에서, 남성의 경우, 핀란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이미 1970년대 초반에 평균 은퇴연령이 62세



資料: 방하남 외(2004) 재구성.

〈그림 6〉 OECD 주요국 남성 평균 은퇴연령推移

정도였고 1980년대를 거쳐 1990년에 이르러서는 60세 이하로 낮아졌다. 반면, 미국, 포르투갈, 노르웨이, 일본, 한국 등은 1990년 말까지 평균 은퇴연령이 64세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평균 은퇴연령이 전반적으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평균 은퇴연령이 낮아지지 않은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여성들의 경우도 일본과 한국은 평균 은퇴연령이 각각 약 65세, 67세로 국제적으로 은퇴가 아주 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에 따른 은퇴연령의 차이는 해당국가가 표방하는 고령자 복지모델과 케를 같이 하지만, 한국의 높은 은퇴연령은 고령자를 위한 근로복지가 확충 되서라기보다는 社會保障制度의 미비로 인해 고령자의 생계를 고령자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여서 完全高齡年金이 지급되면 과거 OECD 국가들이 경험한 조기은퇴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방하남 외(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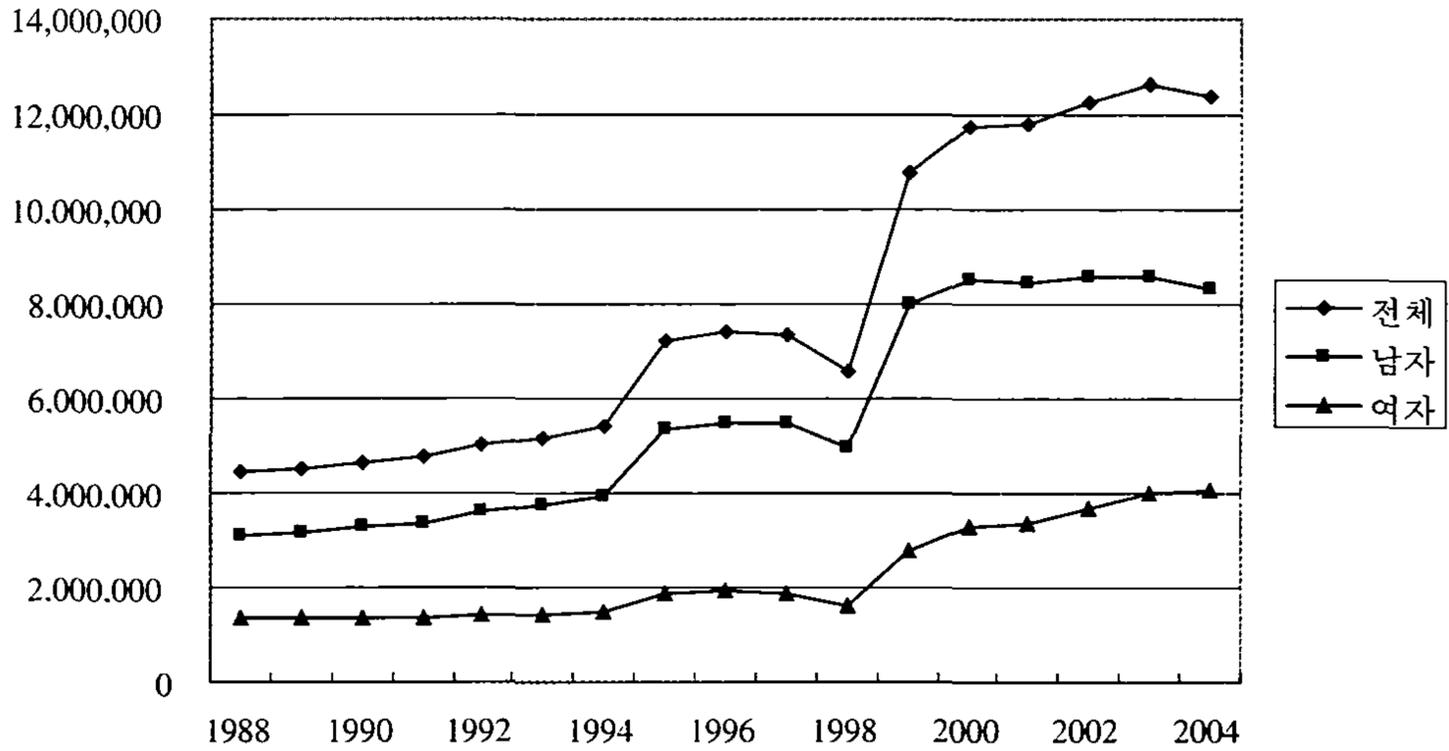
또한 방하남 외(2004)에 의하면, 노동시장 참여여부가 아닌 기업에서의 퇴직 혹은 은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연령은 55~56세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거의 50% 정도가 정년을 55세 전후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의 약 50% 정도는 50대 중반 이전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고, 60세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남성 근로자의 약 69%, 여성근로자의 약 66%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

직을 하게 되어 60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어 있는 비율이 1/3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非賃金勤勞者보다 賃金勤勞者의 조기퇴직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 퇴직연령은 남성의 경우 임금 근로자가 53.8세, 비임금근로자가 55.5세, 여성의 경우 임금근로자가 50.1세, 비임금근로자가 57.4세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 형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남성의 평균 퇴직연령은 54.4세, 여성의 평균 퇴직연령은 53.8세로 보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기업에서의 퇴직 후엔 자영업으로 전환 후에 노동시장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연금제도가 성숙한 후엔 조기노령연금이 55세부터 수급이 가능해지는데, 그럴 경우엔 생계를 위해 勞動市場에 계속 남기보다는 早期隱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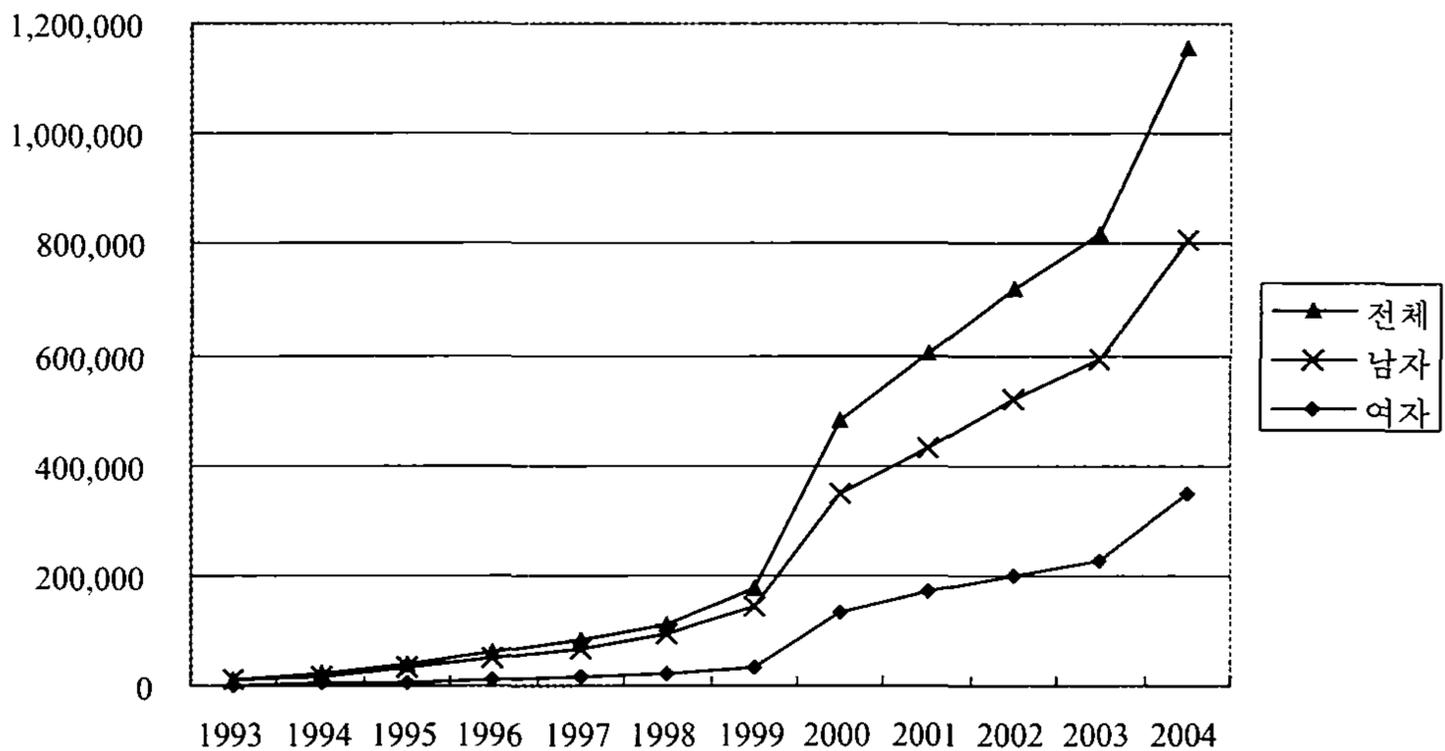
2.3. 高齡化와 公的年金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인 國民年金은 1986년 국민연금법 공포 이후 1988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995년에는 농어촌지역 자영업자 및 농어민, 그리고 1999년 4월부터는 도시지역 주민이 가입하게 되어 전 국민연금이 실시되었다. 2004년 현재 국민연금 總加入者 數는 17,181,778명이고, 남자는 11,300,507명, 여자는 5,881,271명이다.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에 외자를 제외하면 전체 가입자 수는 12,387,154명, 그 중 남자는 8,346,956명, 여자는 4,040,198명이다. 1988년 당시 가입자는 전체 노동인구의 25%인 4백만 명 정도였으나, 2004년에는 전체 노동인구의 75%인 천 7백만 정도가 가입되었으나 실제로는 전체 노동인구의 50% 정도가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의 급여 중 노령연금의 受給者 數는 2004년 현재 1,156,098명이고 남자는 808,487명, 여자는 347,611명이다. 이 수급자 수는 조기노령연금과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수의 합계이다. 완전노령연금은 2007년에야 수급이 개시된다. 완전노령연금은 적어도 2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60세에 도달한 사람에게 수급권이 주어지게 된다. 완전노령연금의 賃金代替率은 평균소득근로자가 40년 가입 시 국민연금도입초기에는 70%였으나 1998년 연금법 개정으로 1999년 이후의 보험기간에 대하여 60%로 하향조정되었다. 그러나 재정안정화를 위한 1998년의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 재정 적자가 예상되자, 최근에 급여의 추가적인 하향조정과 보험료율의 상향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연금법 개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이 장기 재정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현행 40년 가입평균소득자의 임금대체율을 2004~2007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55%로, 그리고 2008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50%로 인하하도록 되어 있다[김상호(2003)].

그러면 고령층의 공적연금은 家計所得 중 어느 정도의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아보



〈그림 7〉 年度別 國民年金 加入者 現況



〈그림 8〉 年度別 老齡年金 受給者 現況

자. 이 분석을 위해서 가계소비실태조사 1996년과 2001년 자료를 이용하여, 〈表 4〉와 같이 연령대별 가계소득 구성을 정리해 보았다. 가구주의 연령별 자료를 바탕으로 가구주의 연간 근로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을 구성하는 공적연금, 기타사회보장수혜, 사적보조금을 각각 구하고 그 비중을 계산하여 공적연금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변했는가와 고령가구의 주된 소득원에 대해 비교해 보았다.⁽⁴⁾ 〈表 4〉를 보면 가구주가

〈表 4〉 年齡代別 家計所得 構成

2001년	소득원	소득액	구성비	1996년	소득원	소득액	구성비
55-59세 N=2,009	근로소득	1,653	81.38	55-59세 N=3,558	근로소득	1,473	79.37
	자산소득	243	11.95		자산소득	212	11.43
	공적연금	42	2.06		공적연금	39	2.10
	기타사회보장수혜	22	1.11		기타사회보장수혜	6	0.30
	사적보조금	71	3.51		사적보조금	126	6.80
	합계	2,032	100		합계	1,856	100
60-64세 N=1,723	근로소득	924	64.57	60-64세 N=2,496	근로소득	1,134	72.73
	자산소득	263	18.39		자산소득	203	13.02
	공적연금	118	8.24		공적연금	78	5.01
	기타사회보장수혜	17	1.19		기타사회보장수혜	5	0.31
	사적보조금	109	7.60		사적보조금	139	8.93
	합계	1432	100		합계	1,559	100
65세 이상 N=3,139	근로소득	329	35.12	65세 이상 N=3,396	근로소득	283	28.72
	자산소득	215	22.92		자산소득	203	20.53
	공적연금	106	11.35		공적연금	66	6.67
	기타사회보장수혜	57	6.03		기타사회보장수혜	20	2.06
	사적보조금	230	24.57		사적보조금	415	42.03
	합계	937	100		합계	987	100

노령에 접어들면서 소득원의 의존도가 근로소득에서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쪽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적연금은 55세 이상에서는 2.06% 정도 차지하나, 60세에서는 8.24%, 65세 이상에서는 11.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목할 만한 사실로 私的補助金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아직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가 성숙하지 못하여 가계소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1996년과 비교하여 보면 公的年金에 대한 의존도는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67%에서 11.35%로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다. 2000년의 60-64세 소득 중 소득원별 비중은 근로:시장:가족:국가의 역할이 6:2:1:1 정도라고 볼 수 있다. 1996년의 7:1.5:1:0.5와 비교해 보았을 때 국가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층에게 있어서의 3.5:2.5:2.5:1.5로 이전소득을 통하여 사

(4) 공적연금은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을 포함하며, 기타사회보장수혜는 생활보호가구보조금, 국가유공자보조금, 장애인보조금, 노인보조금,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조금, 실업급여를 포함한다. 사적보조금은 가구주의 배우자, 부모, 친척, 자녀, 민간사회단체에 의한 보조금을 의미한다.

적으로 조달하는 비중이 크고, 공적이전소득은 미미한 수준임을 또한 알 수 있다. 그러나 완전노령연금의 수급이 개시되면 공적연금이 고령층의 주된 소득원이 될 수 있다. 또한 공적연금의 수급과 함께 고령층 노동공급의 패턴도 달라질 수 있다.

3.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고령층 노동시장 퇴직 요인

3.1. 국민연금의 퇴직 요인 분석

3.1.1. 公的年金과 高齡層 退職 誘因의 關係에 관한 既存論議 檢討

公的年金과 勞動供給의 상관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의 의견들은 일치되지 않는다. 우선, 1969-79년 사이의 the Retirement History Survey에 기초한 공적연금부의 변화에 대한 많은 연구[Hurd and Boskin(1984), Burtless(1986), Anderson, Burkhauser, and Quinn(1986)]에서는 公的年金富(Social Security Wealth)가 많이 상승한 이 시기 동안에 각 연구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졌고, 조기은퇴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였다. Hurd and Boskin(1984)에서는 1969년에 공적연금지급액이 高齡男性의 退職率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는데, 공적연금부가 \$10,000(1969년 기준) 증가했을 때 퇴직률이 7.8% 증가했고, 1968년부터 1973년 사이의 공적연금지급액의 52% 증가가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전체 8.2%의 감소를 설명함을 보였다. Burtless(1986)에서는 근로자가 받게 되는 공적연금수급액이 갑자기 변하는 경우, 이를 예상한 경우와 예상 못한 경우에 은퇴행태와 예상 못한 변화에 대해서 隱退決定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했다. 1969-72년의 은퇴를 결정해야 하는 고령남성들이 연금수급액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 장기적으로 평균 은퇴연령이 17세 떨어지고, 62세에서 65세 사이에 은퇴할 확률이 2% 증가함을 제시했다. Moffitt(1987)에서는 1955-1981년까지의 the March Current Population Survey로부터 얻어낸 시계열 집계변수를 가지고 연령그룹을 4개로 나누어서(25-34, 35-44, 45-64, 65세 이상) 公的年金富의 변화가 각 연령그룹 勞動供給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공적연금부가 증가하면 노동공급은 줄어든다는 것을 알아냈다. Diamond and Hausman(1984)은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Older Men 자료를 이용하여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은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알아냈다. 최근의 연구인, Gruber and Wise(1999, 2002)에서는 공적연금제도가 많은 국가들에서,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은퇴를 잘 설명함을 보였다. Gruber and Wise(1999)에서는 조기은퇴와 노동시장에서의 이탈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조기은퇴가능 연령 이후에 근로할 경우 공적연금은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조기은퇴하도록 유인함을 밝혔다. 국가마다 다른 연금체계, 암묵적 세율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퇴직행태의 다양함을 유발하였다고 말한다. Gruber and Wise(2002)에서는 이를 발전시켜 국가 간 상이한 제도하에서도 모든 국가들의 근로자들이 공적연금 퇴직 유인에 비슷하게 반응함을 알아냈다. 그리고 제도를 수정할 때 고령층의 노동시장참가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됨을 보였다.

반대로, 公的年金이 勞動供給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는데, Aaron(1982)에서는 공적연금이 고령층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했고, Gordon and Blinder(1980)에서도 1969, 1971, 1973년 자료를 이용하여 58-67세 사이의 백인 남성들의 은퇴결정 요인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공적연금제도는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음을 제시했다. Krueger and Pischke(1992)에서는 한 가구당 公的年金富의 감소가 勞動供給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은퇴를 늦출 경우에 연금지급액을 올려주었을 때 노동시장참가율이 증가했으나, 그 공적연금부의 효과는 Hurd and Boskin(1984)의 연구에서보다 1/6 이하였다. Baker and Benjamin(1999) 1984년과 1987년에 캐나다의 공적연금 조항에 조기퇴직에 대한 조항이 도입이 60-64세의 남성들의 연금수혜행위와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조기퇴직조항의 도입으로 60-64세의 사람들의 조기퇴직연금수급 신청이 늘기는 했지만, 조기은퇴의 증가를 야기하지 않았음을 보였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高齡層의 勞動供給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최경수 외(2003), 장지연(2003), 방하남 외(2004)]. 허재준·전병유(1998)에서 우리나라의 1980년에서 1996년까지의 55-64세의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가지고 고령 남성들의 경제활동참가는 어느 정도 景氣變動(Business Cycle)에 의해 달라짐을 밝혔다. 이철희(근간)에서는 60세 이상의 남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농촌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OECD의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상이하게 1960년대 중반에서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는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1997-2000년 기간은 金融危機의 효과가 크기에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을 결론짓기도 어렵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후에는 농촌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할 것이고, 교육 정도나 도시지역의 인구비중의 증가, 비농업부문에 종사하는 비중이 큰 것 등을 감안할 때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國民年金이 개시되고 隱退所得이 증가하면 노동보다는 여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노동시장의 수요측면에서도 技術의 변화와 産業構造의 변화가 고령층을 早期隱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예상했

다. 김태일(2004)에서는 공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공적연금의 존재는 노후의 근로동기를 감소시킨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공적연금이 개시되지 않았고 2008년에야 완전노령연금이 개시되므로, 아직 공적연금이 조기퇴직이나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3.1.2. 公的年金의 退職效果

공적연금은 노동시장참여에 크게 두 가지 誘因으로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는 연금을 최초로 수혜할 수 있는 연령이다. 이것을 조기은퇴연령이라고 부른다. 평균은퇴연령도 중요하지만 최근 들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평균은퇴연령까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早期老齡年金 受給可能年齡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조기노령연금 수급가능연령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일을 계속하려는 결정에는 期待年金資産變動分(Social Security Wealth Benefit Accrual)의 패턴이 영향을 미친다. 은퇴예상연령에서의 모든 연금혜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을 그 연령에서의 公的年金富(Social Security Wealth: SSWa) 혹은 기대연금자산이라고 하는데, 은퇴예상연령에서 한 해 은퇴를 연장할 경우에 공적연금부가 얼마나 변하는지가 勤勞誘因으로 작용한다. 즉, a 세에 은퇴를 하려는 경우의 기대연금자산변동분은 다음과 같다.

$$SSW \text{ Accrual} = SSW_{a+1} - SSW_a$$

일년을 더 일할 때 기대연금자산변동분(혹은 연금수급액변동분)의 값이 양(+이라는 것은, a 세에 은퇴를 한 해 미루고 한 해 더 근로를 연장하고 한 해 연금가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a+1$ 세부터 받게 되는 총연금수급액이 a 세에 받는 총연금수급액보다 증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a+1$ 세에 받게 되는 총 임금소득 대비 공적연금의 증가분의 비율(年金支給增加率: Accrual Rate)이 양(+의 값을 가지거나 연금보험료율보다 낮을 경우에, 공적연금은 연금가입자에게 暗默的 補助金(Implicit Subsidy)처럼 느껴진다. 반대로 그 비율이 음(-)의 값을 가지면 추가적인 근로와 연금가입 후에 총연금수급액은 감소되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연금가입자는 공적연금을 暗默的 租稅(Implicit Tax)처럼 느끼게 된다. 연금수급액변동률이 음(-)이면, 노동공급을 계속하려는 유인을 억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계속해서 근로를 연장하면 기대연금자산은 줄어들게 되고, 공적연금은 근로자에게 암묵적인 세금이 부과되는 것처럼 작용하고,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즉, 은퇴를 늦추고 한 해 근로를 연장한다는 것은 연금수혜를 한 해 늦게 시작하고 수혜 가능한 햇수는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추가적인 근로는 암

목적 조세도 지불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연금 수령액을 줄인다[Gruber and Wise(2002)]. 이러한 논리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제도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직 유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항에서 분석할 것이다.

3.1.3. Simulation Modeling

본 항에서는 年金支給增加率(Accrual Rate) 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의 은퇴 유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완전고령연금의 수급이 개시되어지지 않아, 각 연령별 공적연금부에 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국민연금통계연보 1988-2004년 자료를 이용하여 표준소득월액 등급별/연령별/성별 가입자현황을 바탕으로 중위소득자와 소득분위 10%, 25%, 75%, 90% 근로자의 公的年金富(Social Security Wealth)를 계산하였다. 가정한 근로자는 1988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며, 2007년에 60세가 되어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자이다. 국민연금급여 산식에 따라 공적연금부를 계산하였으며, 계산에 사용된 기본산식은 아래와 같다.

$$\tilde{W}_a = \frac{1}{t} \sum_{i=1}^t (\tilde{W}_{ai} \times di)$$

$$B_a = [2.4(\bar{W} + 0.75 \tilde{W}_a) \times \frac{p_1}{p} + 1.8(\bar{W} + \tilde{W}_a) \times \frac{p_2}{p}] \times \left(\frac{1 + 0.05n}{12} \right)$$

$$PVB(a) = \sum_{i=0}^{s-\bar{a}} \frac{Bi \times ci}{(1+r)^i}$$

$$netSSW = PVB - PVT$$

\tilde{W}_a : 가입자 개인의 a 세의 기본연금액 계산 위한 가입기간 동안($a - a_0$)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bar{W} : 연금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di : 연도별 재평가율

t : 가입기간 ($a - a_0$)

B_a : 기본연금액

ci : 연금종별 지급율 및 제한율

r : 명목이자율 (discount rate)

s : 기대여명

\bar{a} : 연금 수급 시작 연령

PVB: *a*세에 퇴직시 기대여명까지 연금수급액

PVT: 가입기간 동안의 보험료

p: 가입자의 전체 가입월수

*p*₁: '98.12.31. 이전 가입월수

*p*₂: '99. 1. 1. 이후 가입월수

n: 20년 초과월수

基本年金額 계산에 필요한 \tilde{W}_a , \bar{W} , d_i 등은 1988~2005년 자료는 국민연금통계연보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했으며, 2006~2013년까지는 각각의 변수에 시간추세가 있다고 보고 예측한 후 예측값을 이용하였다. 향후의 賃金所得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예측치를 반영하였다. 공적연금부의 현재가치할인에 사용되는 名目利率(*r*)은 회사채 3년 만기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KDI 경제전망을 이용하여⁽⁵⁾ 향후 우리나라의 금리가 4%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4%를 현재가치할인율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공적연금부의 변화와 그에 따른 암묵적 세율의 변화가 개인의 은퇴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3, 4, 5%로 변화시켜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PVB*는 퇴직 후 매년 기대연금급여액을 각 연도의 생존확률 및 재평가율을 적용해서 55세를 기준으로 현재가치화한 합계액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생존확률로 재평가하는 대신, 총기대여명 동안 연금급여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연금수급이 시작되면 77세까지 받는 연금급여액을 재평가하였다.⁽⁶⁾ 또한 국민연금은 60세가 되면 연금수급자격이 주어지지만 55세에 15년 이상 가입시 早期老齡年金을 받을 수 있다. 단, 55세부터 수급할 경우 기본연금액의 75%만을 받을 수 있고 한 세씩 연장할 경우 在職者老齡年金을 받게 되는데 이때의 감액률은 5%씩 줄어 60세에는 기본연금액을 받게 된다. 또한 60세 이후에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은 61세에는 50%, 62세에는 60%, 65세에는 90%만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감액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60세 이후에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는 않아도 된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제도를 반영하여 소득분위별로 공적연금부를 계산해 보았다.

3.1.4. 中位所得勤勞者의 Simulation

중위소득근로자 Simulation에서 가정한 근로자는 1988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며,

(5)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추계에서도, 금리를 4% 정도로 가정하여 사용한다.

(6) Bernheim(1987) 등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이 기대연금급여 현재가치 계산에 보다 적합하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表 5〉 中位所得者의 境遇 (利率率 4%)

은퇴연령	임금대체율	공적연금부 (SSW)	연금지급증가분 (Accrual benefits)	연금지급증가율 (Accrual rate)	암묵적 세율 (Implicit tax rate)
55	0.19	70,067,236	2,817,737	0.040	-0.12
56	0.21	72,884,973	2,473,473	0.034	-0.11
57	0.23	75,358,446	4,769,932	0.063	-0.20
58	0.26	80,128,379	2,372,704	0.030	-0.10
59	0.27	82,501,083	2,570,975	0.031	-0.11
60	0.31	85,072,058	-3,607,881	-0.042	0.15
61	0.30	81,464,177	-2,775,293	-0.034	0.12
62	0.28	78,688,883	-2,001,414	-0.025	0.09
63	0.27	76,687,470	-1,282,957	-0.017	0.05
64	0.26	75,404,513	-616,806	-0.008	0.03
65	0.25	74,787,706	0	0.000	0.00
66~	0.24	74,787,706	0	0.000	0.00

2007년에 60세가 되어 수급대상이 되는 자이다. 국민연금통계연보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 中位所得(median)을 계산하고 그 값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기본연금액과 55세 이후에 받게 되는 연금스케줄을 기대여명까지 계산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퇴직유인 분석에 대한 자료를 얻어냈다.

〈表 5〉에서 첫 번째 열은 근로자가 은퇴를 하는 隱退年齡을 나타낸다. 은퇴연령 55세-59세까지는 조기노령연금을, 60세부터는 완전노령연금 지급받는다. 60세 이상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근로를 한다면 재직자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고 노령연금종류에 따라 퇴직연령에 따라 감액률을 적용하였다. 두 번째 열은 각 연령별 월소득 대비 연금의 월수령액 비율인 賃金代替率을 구한 것인데 60세가 지나도 일을 계속할 경우 연금의 월수령액이 일정 비율 감액되어 지급되고 60세 이후에 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임금상승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61-64세의 결과는 60세에 완전노령연금을 받는 경우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경우 소득대체율이 3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1999년 개정 이전의 제도도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득대체율과 비슷한 결과가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어진 은퇴연령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경우 수급시작연령부터 77세까지 받게 되는 각 세별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총합인 公的年金富(net SSW)을 세 번째 열에 정리하였다. 年金支給增加分(Accrual benefits)은 주어진 은퇴연령보다 한 해 더 일했을

경우 받게 되는 공적연금부(SSW_{a+1})에서 주어진 연령에서 받게 되는 공적연금부(SSW_a)의 차이로 정의된다. 그리고 年金支給增加率(Accrual rate)은 공적연금부 대비 연금지급증가분의 비율⁽⁷⁾로 계산된다. 마지막 열의 暗黙的 稅率(Implicit tax rates)은 한 해 더 일할 때 얻게 되는 소득 대비 기대연금자산증가액의 비율⁽⁸⁾로 계산된다. 세율이 음의 값을 갖는 경우는 暗黙的 補助率(Implicit subsidy rates)로 보면 된다.

〈表 5〉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早期老齡年金을 수급하는 55세부터 59세까지는 暗黙的 稅率이 음(-)의 값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 연령대에는 조기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55세에는 기본연금액의 75%만을 기대여명까지 받게 되므로 퇴직을 하고 연금수급을 시작하는 것보다 한 해 더 근로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한다. 즉 이 연령대에서는 국민연금은 근로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完全老齡年金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60세에는 暗黙的 稅率이 15%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험료율인 9%보다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느껴진 근로자는 근로를 연장하기 보다는 퇴직을 결정할 유인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60세가 되었는데도 계속하여 일을 하면 국민연금은 세율로 느껴져서 노동시장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유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65세 이후에 암묵적 세율이 0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60세 이후가 되면 더 이상 연금가입이 불가능하고 일을 할 경우에는 감액률이 적용되다가 65세 이후에는 감액률도 적용되지 않아서 더 이상의 공적연금부의 변화가 없다는 제도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完全老齡年金의 수급이 시작되는 60세에 공적연금부의 값이 가장 크고 암묵적 세율도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 같이 연금수급시작연령에서 일을 한 해 더 하고자 하는 유인은 줄어들고 조기은퇴 유인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는, 利率을 4%에서 3%, 5%로 변화시켜서 결과가 현재가치할인율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이자율을 3%나 5%로 변화시킨 경우에도 4%인 경우처럼 60세 이후에 퇴직유인이 존재하는 전체적인 결과해석은 비슷하다. 60세에 공적연금부는 이자율이 3%인 경우에는 4%일 때보다 14.2% 증가하고, 5%인 경우에는 12.21% 감소한다. 公的年金富의 변화율은 55세부터 연령이 높아질수록 변화율은 커지나 연금지급증가율의 차이를 보면 그 정도는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60세 이전엔 暗黙的 稅率은 4~5% 정도 달라지고 60세 이후엔 암묵적 세율도 1% 정도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본 이자율 4%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60세에 조기퇴직 유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 $(SSW_{a+1} - SSW_a) / SSW_a$

(8) $-(SSW_{a+1} - SSW_a) /$ 한 해 더 일할 때 얻게 되는 소득

〈表 6〉 利率 變化 時 結果 整理

은퇴연령	이자율 4% → 3%로 변화 시			이자율 4% → 5%로 변화 시		
	공적연금부 변화율(%)	연금지급 증가율 차이	암묵적 세율 차이	공적연금부 변화율(%)	연금지급 증가율 차이	암묵적 세율 변화
55	9.62	0.90	-0.04	-8.34	-0.93	0.04
56	10.56	0.87	-0.04	-9.16	-0.91	0.04
57	11.50	0.86	-0.05	-9.96	-0.89	0.05
58	12.40	0.86	-0.05	-10.72	-0.90	0.04
59	13.34	0.79	-0.05	-11.49	-0.83	0.04
60	14.20	0.34	0.01	-12.21	-0.36	-0.01
61	14.61	0.26	0.01	-12.54	-0.27	-0.01
62	14.92	0.18	0.01	-12.79	-0.18	-0.01
63	15.13	0.10	0.00	-12.95	-0.11	0.00
64	15.25	0.04	0.00	-13.05	-0.05	0.00
65	15.30	0.00	0.00	-13.08	0.00	0.00
66~	15.30	0.00	0.00	-13.08	0.00	0.00

3.1.5. 所得分位別 分析

근로자들의 소득분위별로 공적연금의 은퇴 유인을 분석해 보고자, 所得分位를 5개 계층, 하위 10%(10th percentile), 하위 25%(25th percentile), 상위 25%(75th percentile)와 상위 10%(90th percentile)으로 나누었다.

그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소득분위의 근로자의 경우의 임금대체율이 다른 경우들보다 가장 크고, 60세에 은퇴하는 경우의 암묵적 세율도 다른 소득분위의 경우들보다 크게 나타나,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은 높은 所得代替率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早期隱退 유인으로도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제도적 특징상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은 근로에 대한 어떠한 유인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국민연금은 60세에 은퇴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암묵적 세율이 양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다만 그 정도에 있어서 소득이 적을수록 큰 유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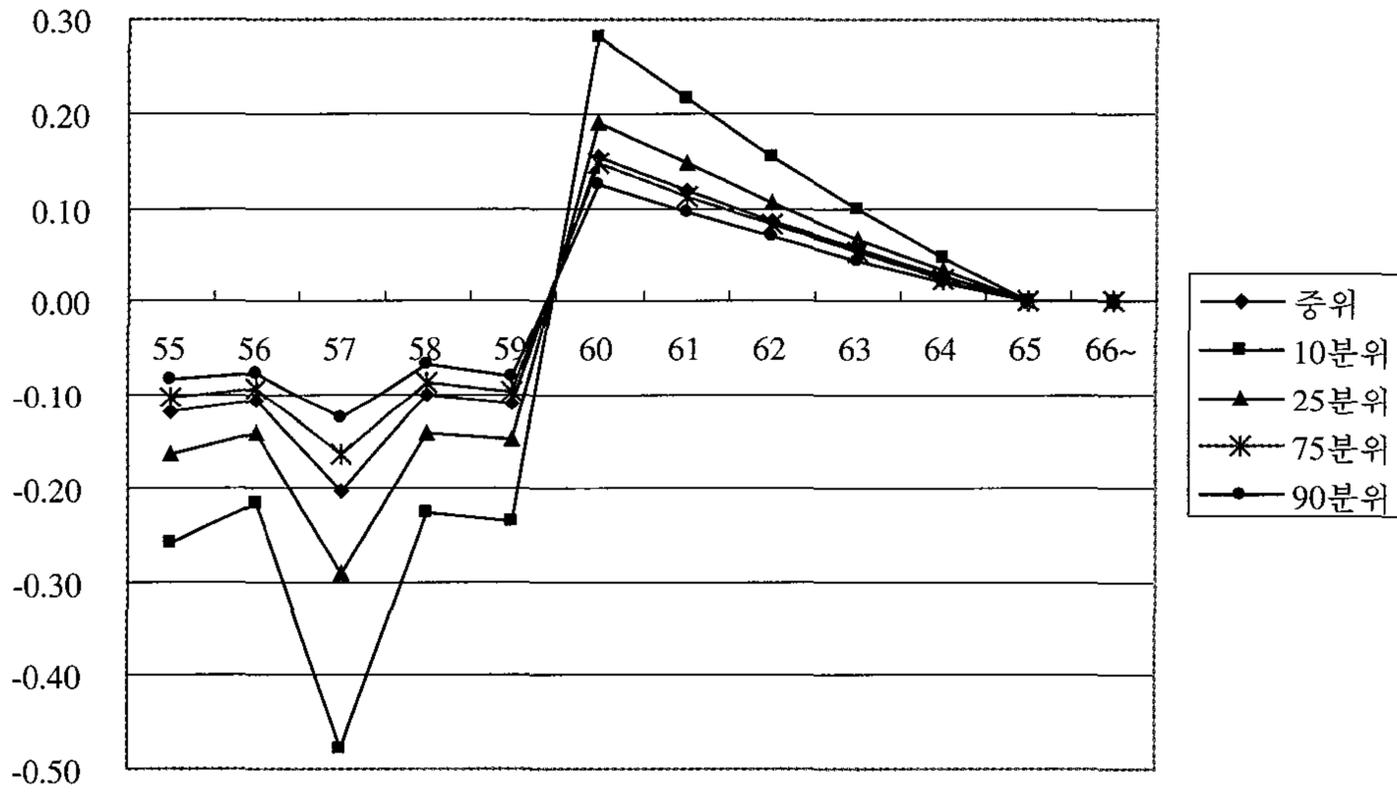
20년 가입한 근로자의 賃金代替率을 소득분위별로 비교해 보면, 60세의 소득분위 하위 10%의 임금대체율은 49%, 하위 25%의 임금대체율은 38%, 중위소득층의 임금대체율은 31%, 상위 25%의 임금대체율은 29%, 상위 10%의 임금대체율은 25%로 국민연금이 所得階層에 따라 연금급여를 차등해 所得再分配 機能을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음을 관찰할

〈表 7〉所得分位別 結果

은퇴연령	10th Percentile Earners			25th Percentile Earners		
	임금대체율	연금지급 증가율 (Accrual rate)	암묵적 세율 (Implicit tax rate)	임금대체율	연금지급 증가율 (Accrual rate)	암묵적 세율 (Implicit tax rate)
55	0.37	0.05	-0.26	0.25	0.04	-0.17
56	0.40	0.04	-0.22	0.27	0.04	-0.14
57	0.43	0.08	-0.48	0.29	0.07	-0.29
58	0.48	0.03	-0.23	0.33	0.03	-0.14
59	0.49	0.03	-0.24	0.34	0.03	-0.15
60	0.56	-0.04	0.28	0.38	-0.04	0.19
61	0.54	-0.03	0.21	0.36	-0.03	0.15
62	0.51	-0.02	0.15	0.35	-0.02	0.10
63	0.49	-0.02	0.10	0.33	-0.02	0.07
64	0.47	-0.01	0.05	0.32	-0.01	0.03
65	0.45	0.00	0.00	0.31	0.00	0.00
66~	0.43	0.00	0.00	0.29	0.00	0.00

〈表 8〉所得分位別 結果

은퇴연령	75th Percentile Earners			90th Percentile Earners		
	임금대체율	연금지급 증가율 (Accrual rate)	암묵적 세율 (Implicit tax rate)	임금대체율	연금지급 증가율 (Accrual rate)	암묵적 세율 (Implicit tax rate)
55	0.19	0.035	-0.10	0.16	0.034	-0.08
56	0.21	0.031	-0.09	0.18	0.030	-0.08
57	0.23	0.053	-0.17	0.19	0.048	-0.13
58	0.25	0.026	-0.09	0.21	0.025	-0.07
59	0.26	0.029	-0.10	0.22	0.028	-0.08
60	0.29	-0.043	0.15	0.25	-0.044	0.12
61	0.28	-0.034	0.11	0.24	-0.035	0.10
62	0.27	-0.026	0.08	0.23	-0.026	0.07
63	0.26	-0.017	0.05	0.22	-0.017	0.04
64	0.25	-0.008	0.02	0.21	-0.008	0.02
65	0.24	0.000	0.00	0.20	0.000	0.00
66~	0.23	0.000	0.00	0.19	0.000	0.00



〈그림 9〉 所得分位別 暗默的稅率 比較(利子率 4%)

수 있다.

所得分位別 暗默的 稅率(Implicit tax/subsidy rate)을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그림 9〉와 같다.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60세 이전에는 연금은 暗默的 補助金처럼 느껴지고, 60세 이후엔 暗默的 租稅처럼 느껴져서 60세에 조기퇴직할 유인으로 작용한다. 전소득분위에서 60세 이전에 퇴직할 경우 조기연금을 받는데 이 경우엔 감액을 적용으로 공적연금 부가 줄어들고 퇴직보다는 근로를 한 해 더 연장하고 연금가입을 연장할 유인이 있다. 60세 이후에는 한 해 더 근로를 연장하는 것보다 노동시장에서 퇴직할 유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퇴직유인의 정도는 所得分位가 낮을수록 더 크게 작용해서, 하위 10% 소득자의 경우에 연금의 지급에 따라 노동이탈의 가능성이 다른 소득분위보다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면, 상위 소득 10%의 경우엔 다른 소득분위보다 연금지급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3.2. 다른 國家들과 結果 比較

노동시장참여와 은퇴 유인에 대한 여러 국가들과 한국의 중위소득자 자료를 〈表 9〉와 같이 정리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에 공적연금의 최초수혜가능 연령이 早期隱退 年齡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완전노령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60세에 조기은퇴유인이 존재하고 조기은퇴연령이 된다. 우리나라 외의 다른 국가들의 자료는 1997년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공적연금이 성숙한 다른 선진국들의 축적된 연구결과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表 9〉各國別 非使用 能力, 早期隱退年齡에서의 여러 結果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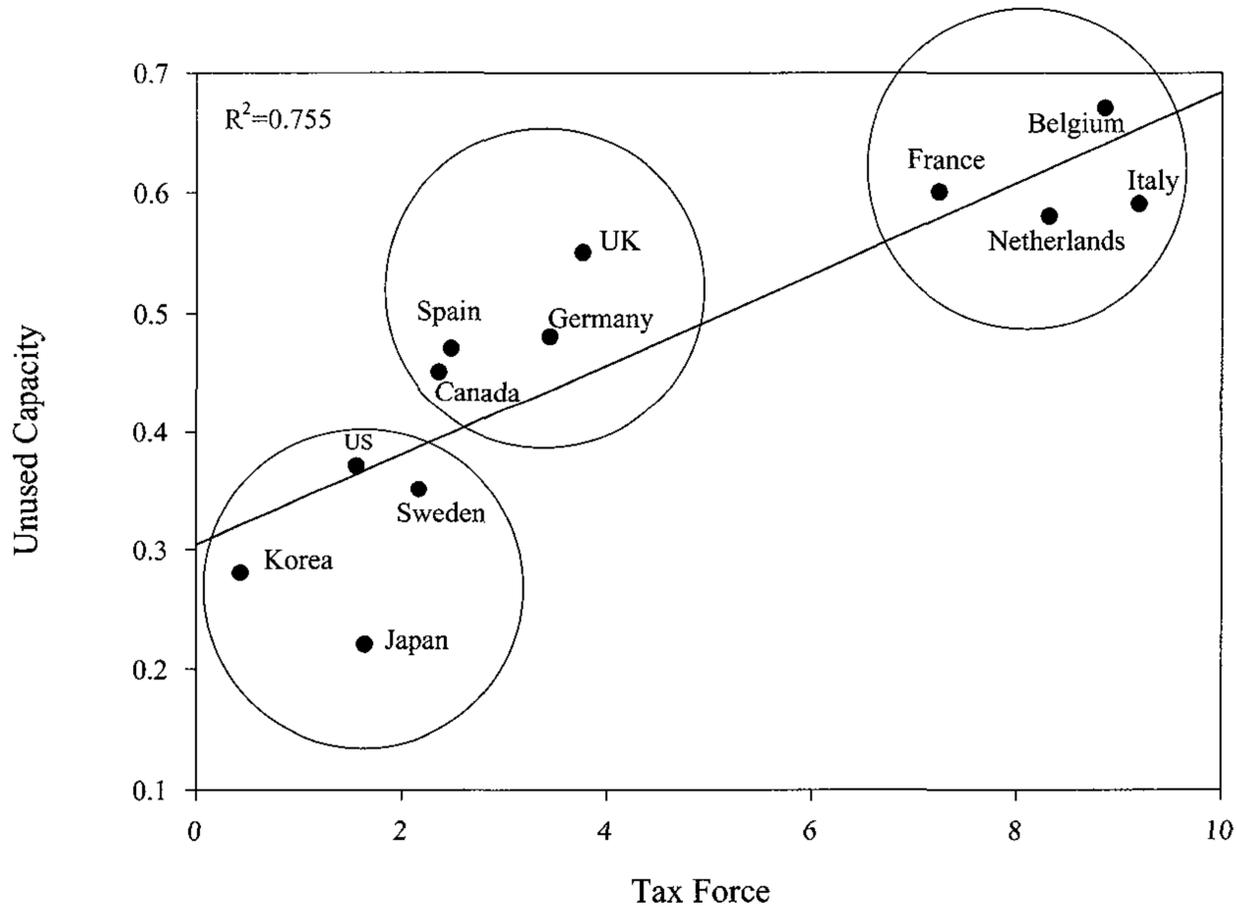
국가	55-65세의 비사용 능력	59세의 비경제활동 참가율	조기은퇴 연령	조기은퇴 연령시 소득대체율	조기은퇴 연령의 연금 지급증가율	암묵적 세율	조기은퇴부터 69세까지의 암묵적 세율 합	조기은퇴 연 령시 노동시 장 이탈률
벨기에	67	58	60	77	-5.6	82	8.87	33
프랑스	60	53	60	91	-7.0	80	7.25	65
이탈리아	59	53	55	75	-5.8	81	9.20	10
네덜란드	58	47	60	91	-12.8	141	8.32	70
영국	55	38	60	48	-10.0	75	3.77	22
독일	48	34	60	62	-4.1	35	3.45	55
스페인	47	36	60	63	4.2	-23	2.49	20
캐나다	45	37	60	20	-1.0	8	2.37	32
미국	37	26	62	41	0.2	-1	1.57	25
스웨덴	35	26	60	54	-4.1	28	2.18	5
일본	22	13	60	54	-3.9	47	1.65	12
한국	28	5	60	31	-4.2	15	0.44	-

資料: Gruber and Wise(1999)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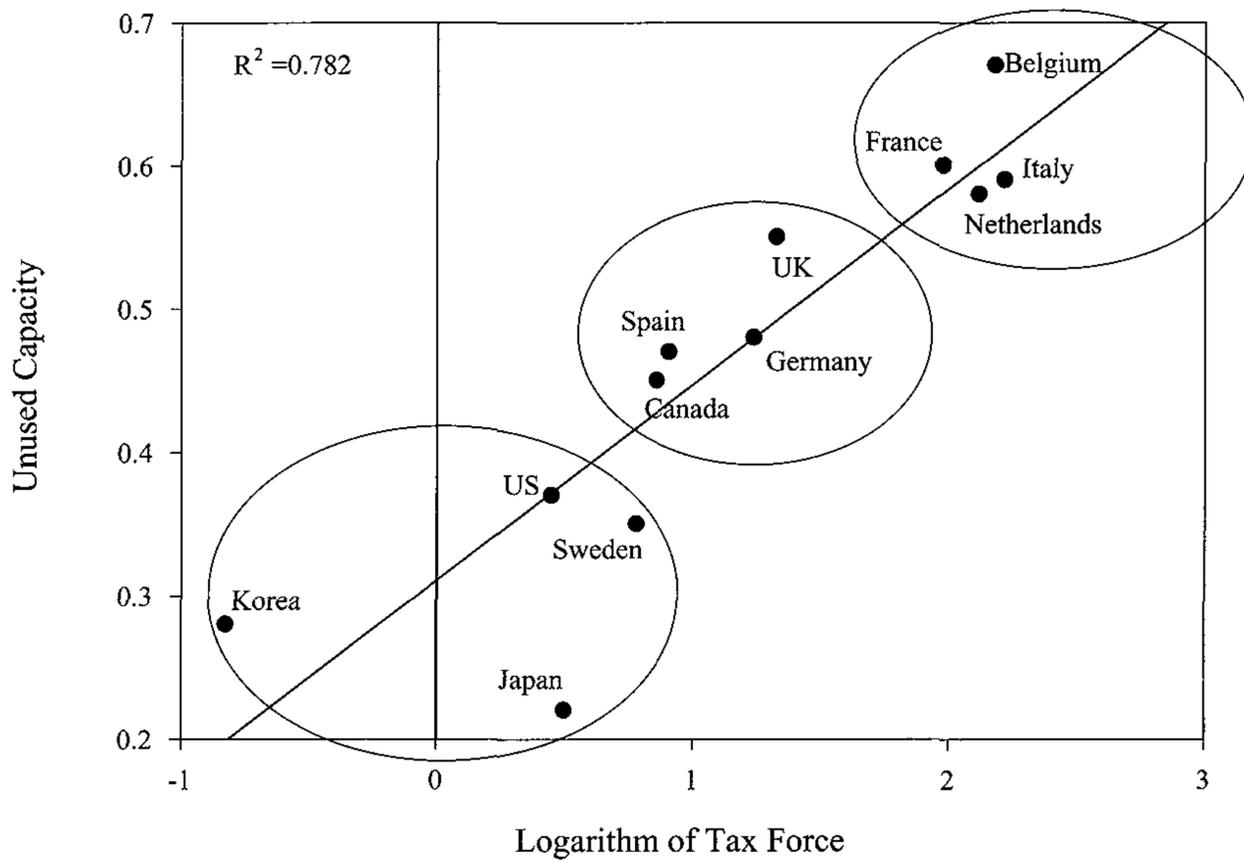
수급개시 시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表 9〉의 자료에서 55-65세 고령인구의 非使用 能力⁽⁹⁾이 높은 국가들은 暗默的 稅率도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연금에 대한 암묵적 세율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에서 떠나도록 하는 유인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사용 능력 정도가 높은 나라에서 조기은퇴연령에서의 소득대체율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퇴직 유인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사용 능력과 일을 계속할 경우에 부과되는 암묵적 세율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이 국가들은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1) 비사용 능력이 높은 그룹: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2) 비사용 능력이 중간인 그룹: 영국, 독일, 스페인, 캐나다; (3) 비사용 능력이 낮은 그룹: 미국, 스웨덴, 일본, 한국. 첫 번째 그룹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83.5%이고 조기은퇴연령에서부터 69세까지의 암묵적 세율의 합의 평균은 8.4%이다. 두 번째 그룹은 각각 48.3%, 3.0%, 세 번째 그룹은 각각 45%, 1.5%이다. 〈그림 10〉과 〈그림 11〉은 이러한 양의 相關關係를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사용 능력이 낮은, 즉,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편이고 연금의 암

(9) (1-경제활동참가율)



〈그림 10〉 非使用能力과 暗默的 稅率



〈그림 11〉 非使用能力과 暗默的 稅率

목적 세율은 낮다. 우리나라는 연금의 퇴직 유인이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낮은 국가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비사용 능력이 낮은, 아직은 고령층 노동력의 시장참여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60-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Blöndal and Scarpetta(1997)에서는 연금의 임금대체율이 관대할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진다고 주장했는데,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도 완전히 성숙하게 되면 賃金代替率도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높아질 것이고 고령자의 經濟活動參加率은 결과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완전 노령연금보다 수급액이 적어지지만 조기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60세보다도 더 낮은 55세에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기업에는 정년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55세 이후가 되면 퇴직을 해야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그 경우에 임금은 더 적고 안정성은 작은 근로여건하에서 근로를 지속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고령 근로자는 勞動市場에서 완전히 隱退하고 연금에 의존하기로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금수급이 가능한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직하는 경우에는 年金支給率이 일정 비율 줄어드는데, 이러한 제도적 특징도 고령 근로자가 연금수급이 가능한 60세 이후엔 감액된 연금을 받기보다는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

3.3. 小結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國民年金이 개시되면 연금수급연령에서 早期隱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근속연수는 줄어들고 개개인의 生涯 勞動供給(lifetime labor supply)이 감소하게 되면 總勞動供給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주어진 인구규모하에서 조기퇴직의 확산은 실질적인 노동공급의 감소를 초래하여 주어진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큰 폭의 노동생산성 증가를 요구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연구의 결과와 국민연금과 고령층 노동시장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금과 노동공급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대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퇴직연령과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은 고령화 사회에서 예상되는 勞動力의 不足問題와 年金財政의 不安問題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서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노력의 일환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을 현재 60세에서 2013년 이후 점진적으로 65세까지 상향 조정하는 조치가 이미 취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60세에서 65세로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높아지면 조기퇴직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노동공급을 계속하고 연금가입을 연장할 유인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명 외(2004)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부분연금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部分年金制度(partial pension system)는 경제활동주기의 후반부에 위치한 노령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의 단계적 단축을 통하여 漸進的 退職(gradual retirement)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한 소득의 상실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제도에서 별도의 보충소득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소득의 상실부분은 고용보험제도, 기업, 동일직종 단위의 공제기금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오늘날 보편적인 퇴직의 형태는 근로 또는 퇴직이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상호 단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점진적 퇴직의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와 퇴직이 병행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수급가능연령의 조정뿐 아니라, 國民年金の 減額率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데,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는 55세부터 59세까지는 早期老齡年金이, 60세부터 64세까지는 在職者老齡年金이 적용되어 각각의 경우에 대해 감액율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수급개시연령인 60세가 65세로 상향조정된 이후에도 재직자 연금제도가 유지될 경우에는 65세부터 69세까지 재직자연금의 감액률이 적용될 것이나, 이 같은 감액률을 폐지함으로써 고령 근로를 촉진 하자는 의견이 있다.

본 연구에서, 국민연금이 개시될 경우의 근로자의 임금스케줄을 계산하고, 공적연금부를 산출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실제 국민연금이 개시된다면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年金과 勞動供給의 관계를 알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향후 연금 및 고령화 정책연구를 위해서도 패널조사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용하(2004)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정책효과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것도 있지만 연금의 경우 그 효과가 장기적, 지속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 및 효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동안 해당되는 개인 및 가구를 관찰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연금과 근로(퇴직) 간의 인과관계, 연금제도의 도입이나 변경이 근로(퇴직) 등 개인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나, 미시데이터의 구축을 통해서 통계자료에 기초한 급여수준 및 보험료율의 조정, 더 나아가 지급개시연령의 조정, 사각지대 대책, 재분배 요소의 조정 등 年金政策은 물론 高齡化 對策의 수립이 필요하다.

4. 맺 음 말

많은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高齡化 現狀이 나타나고 있고, 사람들이 노동시장을 더 이른 나이에 떠나는 早期隱退現狀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 국가들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60-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60년대에 70% 이상이였으나 지금은 20% 이하로 떨어졌다. 이

러한 노동력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은퇴에 대해서 公的年金制度가 상당 부분 설명가능하고 연금수급가능연령과 노동시장에서의 은퇴 간의 강한 相關關係가 존재함을 보였다 [Gruber and Wise(1999, 200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의 진전과 經濟活動參加率을 통한 고령층의 경제활동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60-64세의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나, 외환위기 이후 그 수준이 감소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보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것은 고령층 근로자 중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고, 농촌의 경제활동참가 비중이 크다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 향후 그 경제활동참가율은 産業構造의 변화와 人口의 都市化 등의 의해서 지속하여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향후 연금이 보편적으로 수급가능해지면 다른 선진국들에서처럼 早期隱退 등으로 인하여 勞動供給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현재 은퇴연령은 68세로 다른 OECD국가들의 공식적인 은퇴연령(65세)보다는 높은 편이나 정년제도를 고려해 보면 54.4세로 낮은 것으로 보이고, 은퇴가능성이 임금근로자에게서 더 크다. 아직은 은퇴 후의 고령층의 소득원의 의존도는 이전소득을 통하여 사적으로 조달하는 비중이 크고 공적 이전소득은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고령화가 진행되고, 정부의 사회보장지출의 증가와 연금제도의 성숙 등으로 고령층의 은퇴 후의 소득원의 의존도는 점점 공적연금 쪽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공적연금과 조기은퇴 가능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所得分位別 근로자의 公的年金富(Social Security Wealth)를 계산하고 한 해 근로를 연장할 때의 연금수급증가율과 암묵적 세율 등을 계산해 본 결과, 완전노령연금의 수급이 시작되는 60세의 조기은퇴유인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60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 재직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 경우에 감액률이 적용이 되고, 소득이 있음에도 연금에 계속가입은 불가능한 국민연금의 구조상 근로자에게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유인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적연금이 성숙한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은 고령층의 非使用 能力도 낮은 편이고 연금의 暗默的 稅率도 낮은 편이지만, 다른 국가들의 결과[Gruber and Wise(1999)]와 같이 일반적인 노동시장참여도와 한 해 더 근로하게 될 때 내게 되는 세율과의 상관관계, 즉 노동시장참여와 공적연금의 조기은퇴 가능성 간의 相關關係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공적연금이 성숙하고 완전노령연금의 지급이 개시된 후에야 연금이 고령층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OECD의 다른 국가들에서 보이는 연금이 조기은퇴를 유인하는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의 公式的인 隱退年齡인 65세보다도 낮은 연령에서 연금수급이 가능하다[OECD(2004a)].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조기은퇴현상 등 향후 고령화의 심화에 대비하여 1998년에 제시된 국민연금 개혁의 일안인, 年金最初受惠年齡을 2013~2033년에 걸쳐서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장완료시점까지의 전환기간이 길기 때문에 60-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 정년 이후에 고령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고, 이것은 고령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기은퇴 가능성을 해소하는 國民年金制度의 개선이 필요한데, 다른 유럽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漸進的 退職制度나 재직자 노령연금의 개선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금 제도가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서 미치게 될 다양한 社會·經濟的인 측면의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韓國開發研究員 研究員

130-0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전화: (02)958-4237

팩스: (02)958-4090

E-mail: jhlee05@kdi.re.kr

參 考 文 獻

- 국민연금관리공단(각년도): 『국민연금통계연보』.
- 김상호(2003): “국민연금법 개정의 소득재분배효과,” 『연금포럼』, 12.
- 김태일(2004): “공적연금의 소득보장효과 분석,” KDI 학술대회 발표자료.
- 문형표(1995a): 『국민연금제도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구조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_____ (1995b): 『노후소득보장체계 하에서의 공적연금 개혁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박무환·한성신·서승환·양준모(2004): 『국민연금 재정시뮬레이션을 위한 거시경제변수 장기전망』, 연구보고서 2004-02, 국민연금연구센터.
- 방하남·신동균·김동현·신현구(2004):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고령화대비 합동 연구 시리즈 04-03, 한국노동연구원.
- 윤석명·이정우·김대철(2004): 『고령시대를 대비한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정책보고서

- 2003-06, 국민연금연구센터.
- 이용하(2004): 『국민연금 패널데이터 구축방안』, 정책보고서 2003-5, 국민연금연구센터.
- 이용하·강성호(2000): 『평균소득월액(A값) 산정방법 비교 및 급여체계 개선방안』, 국민연금연구센터.
- 이철희(근간): 『한국의 고령노동: 경제활동과 고용구조의 장기적 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장지연(2003):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Ⅰ)』, 한국노동연구원.
- 장지연·김대일·신동균·조준모·조용만·김정한(2004):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Ⅱ)』, 한국노동연구원.
- 전영준·김종면(2001): 『사회보장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01-07, 조세연구원.
- 최경수·문형표·신인석·한진희 편(2003):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Ⅰ)』, 한국개발연구원.
- 통계청(1996, 2001):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 _____ (2001): 『한국의 사회지표』.
- _____ (2003a): 『2003 고령자통계』.
- _____ (2003b): 『경제활동인구조사』, 미시자료.
- _____ (2004): 『2004 고령자통계』.
- _____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허재준·전병유(1998): 『고령자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 KDI(2004): 『KDI 경제전망』.
- Aaron, H. J.(1982): *Economic Effects of Social Security*,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 Anderson, K. H., R. V. Burkhauser, and J. F. Quinn(1986): “Do Retirement Dreams Fome True? The Effect of Unanticipated Events on Retirement Plan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39**, 4, 518-526.
- Baker, M., and D. Benjamin(1999): “Early Retiremnt Provisions and the Labor Force Behavior of Older Men: Evidentce from Canada,” *Journal of Labor Economics*, **17**, 4, 724-756.
- Bernheim, B. Douglas(1987): “The Economic Effects of Social Security: Toward a Reconciliation of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33**, 3.
- Blöndal, Sveinbjörn, and Stefano Scarpetta(1997): “Early Retirement in OECD Countries: The

- Role of Social Security Systems,” *OECD Economic Studies*, **29**.
- Burtless, G.(1986): “Social Security, Unanticipated Benefit Increases, and the Timing of Retirement,” *Review of Economic Studies*, **53**, **5**, 781-805.
- Diamond, P. A., and J. A. Hausman(1984): “The Retirement and Unemployment Behavior of Older Men,” in Henry Aaron, and Gary Burtless(eds.), *Retirement and Economic Behavior*, Studies in Social Economics Series,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 Gordon, R. H., and A. S. Blinder(1980): “Market Wages, Reservation Wages, and Retirement Decision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4**, **2**, 277-308.
- Gruber, J., and D. Wise(eds.)(1999): *Social Security and Retirement around the Worl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2002): “Social Security and Retirement around the World: Micro Estimation,” NBER Working Paper, **9407**, NBER.
- Hurd, M. D., and M. J. Boskin(1984), “The Effect of Social Security on Retirement in the Early 1970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9**, 767-790.
- Krueger, Alan B., and Jörn-Steffen Pischke(1992): “The Effect of Social Security on Labor Supply: A Cohort Analysis of the Notch Generation,” *Journal of Labor Economics*, **10**, **4**, 412-437.
- Krueger, Alan B., and B. D. Meyer(2002): “Labor Supply Effects of Social Insurance,” NBER Working Paper, **9014**, NBER, Cambridge, U.S.A.
- Lee, Chulhee(2002): “Sectoral Shift and Labor-Force Participation of Older Males in America, 1880-1940,” *Journal of Economic History*, **62**, 512-523.
- _____ (2004): “Changing Industrial Structure and Economic Activity of Older Males in Korea: 1980-2000,” *Seoul Journal of Economics*, **17**.
- _____ (2005): “Labor Market Status of Older Males in the United States, 1880-1940,” *Social Science History*, **29**, **1**.
- Moffitt, R. A.(1987): “Life-cycle Labor Supply and Social Security: A Time-series Analysis,” in Gary Burtless(ed.), *Work, Health, and Income among the Elderly*,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 OECD(1980-1999):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Public Social Expenditure by Main Category*.
- _____ (2003): *OECD Employment Outlook: 2003*.
- _____ (2004a):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Korea*, OECD.

_____ (2004b): *Reforming Public Pensions: Sharing the Experiences of Transition and OECD Countries*, OECD.

_____ (2005): *Economic Policy Reforms: Going for Growth*, OECD.

Peter, Scherer(2002): “Age of Withdrawal for the Labour Force in OECD Countries,”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 49, OECD.

Vincent, P. Crawford, and David M. Lilien(1981): “Social Security and the Retirement Decision,” *QJE*, 96, 3.

〈彙 報〉

1. 李天杓 교수는 『한국자본자유화와 금융자유화의 근년변화』를 출간하였다(2004年 11月 20日).
2. 曹永達 교수(사회교육과)는 대학원협동과정 인지과학전공주임을 겸무하게 되었다(1月 1日).
3.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은 제8기 수료식을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에서 가졌다(2月 4日).
4. 李根 교수는 한국경제학회 총회에서 2004년도 청람학술상을 수상했다(2月 24日).
5. 李承勳 교수는 『재벌체제와 다국적기업』을 출간하였다(2月 25日).
6. 경제연구소 기업경쟁력연구센터는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금융자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005년도 춘계심포지엄을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수련홀에서 가졌다(2月 28日).
7.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은 제9기 입학식을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가졌다(3月 2日).
8. 朴泰鎬 교수(국제대학원)는 국제학연구소장을 겸무하게 되었다(3月 17日).
9. 本 研究所는 4/1분기 중 다음과 같이 주례발표회를 가졌다.
張鏞成 부교수: Productivity, Employment, and Inventories(3月 16日).
柳根寬 교수: 삼성생명의 1990년 부동산 재평가 차익 중 미처리분의 합리적 배분 방안에 관한 경제학적 검토(3月 30日).